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393회 임시회
2021. 9. 14.(화)

2021년도

행정사무감사계획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(안)

1 감사 목적

-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평가·분석하여,
- 우수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추진하고,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·개선토록 하는 한편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

<근거>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
-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2 감사 개요

가. (감사기간) 2021. 11. 9.(화) ~ 11. 22(화) 【14일간】

나. (대상기관)

구 분	대 상 기 관
당 연 기 관	경제통상국, 신성장산업국,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, 농정국(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포함) 농업기술원, 경제자유구역청,
본 회 의 승인기관	충청북도기업진흥원, 충북신용보증재단, 충북과학기술혁신원, 충북테크노파크 ※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계, 재산에 한함.

다. 감사일정 및 장소

감사 일자		대 상 기 관	감사 장소	비고
11. 9.(화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사자료 사전 검토 	산업경제 위 원 실	
11. 10.(수)	10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자유구역청 	산업경제 회 의 실	보고 및 감사
	14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통상국 		
11. 11.(목)	10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충북신용보증재단 	산업경제 회 의 실	보고 및 감사
	14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정국 (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) 		
11. 12.(금)	10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업기술원 	산업경제 회 의 실	보고 및 감사
	14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충북과학기술혁신원 		
	16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충북테크노파크 		
11. 13.(토) ~ 11. 14.(일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사자료 검토 		
11. 15.(월)	10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충청북도기업진흥원 	산업경제 회 의 실	보고 및 감사
	14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성장산업국 		
	16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		
11. 16.(화) ~ 11. 22.(월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충감사 및 감사결과 종합 검토 •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		

※ 감사일정 및 장소는 감사 기간 내에서 필요시 조정될 수 있으며, 증인출석, 업무보고 등 관련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.

3 감사위원회 편성

가. (방침)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(6인)을 감사위원회로 구성

나. (감사위원회) 6명

연번	직 위	성 명	비 고 (위원회 직위)
1	감사위원장	연 종 석	위 원 장
2	감 사 위 원	송 미 애	부위원장
3	〃	원 갑 희	위 원
4	〃	윤 남 진	〃
5	〃	이 상 식	〃
6	〃	이 상 정	〃

다. (사무보조자) 5명

연번	직 위	성 명	비 고
1	수석전문위원	박 노 학	
2	전 문 위 원	박 미 경	
3	주 무 관	김 태 임	
4	주 무 관	이 상 훈	
5	주 무 관	이 송 이	
6	속 기 사	(2명/일)	

4 주요 감사사항

- 2021년도 주요업무 및 도정시책사업 추진상황
- 예산편성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
-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 추진사업
-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
- 업무계획 보고,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
- 각종 민원 및 현안사업 추진 중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
-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5 감사요령

가. 감사 방법

-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, 질의·답변,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
-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해 증언 및 진술 청취

나. 감사진행 순서

- ① 감사실시 선언(감사위원장)
- ② 위원장 인사(감사위원장의 감사실시 취지 등 설명)
- ③ 피감사기관 증인 선서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⑤ 업무현황 보고 청취(업무추진 상황 설명)
- ⑥ 질의·답변(필요 시 현지 확인) ⑦ 감사결과 강평 및 인사
- ⑧ 감사종료 선언

※ 선서요령

- 선서는 피감사대상기관 관계자(증인)를 대상으로 함.
- 피 감사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, 기타 관계자(증인)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제출하도록 함.
-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감사위원장만 기립하여 받도록 함.
- 감사위원장은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함.

6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
가. 작성방법

-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배부
- 피감사기관의 장은 수감내용을 감사종료 2일 이내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
-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종료 직후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⇒ 이를 취합하여 감사일정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⇒ 위원회에서 의결 ⇒ 본회의에 보고

나. 감사결과 보고서 주요내용

- 감사의 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, 일정 및 장소
- 주요 감사실시내용
- 감사결과 처리의견
 -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
 -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

7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감사장 사전준비

- 선서문(피감사공무원), 증인(참고인) 및 의사봉, 좌석배치
- 마이크·음향기기 확인, 속기사 좌석, 일정 공유 및 배치

○ 기타사항

- 본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과 위원이 협의하여 조정 결정